
입 법 정 보

2019-2호



목 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
5.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 (문화관광체육부).....	8
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8
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8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9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
11.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
1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3
1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4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4
1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5
18.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16
19.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2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7
21.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7
2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8
2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1
25.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2
2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2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3
2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3
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4
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5
3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5
32.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통상부).....	26

33.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통상부).....	26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사원).....	27
36.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28
3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1
3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1
4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1
4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2
4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33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4
45.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4
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36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6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4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8
50.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9
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9
5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0
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0
5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2

정부입법 예고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 14. ● 마감일자 : 2019. 2. 2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용 법률 명 정합화(안 별표 1)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2015.1.20., 법률 제13062호)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에 맞도록 함.
 - 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 3)
 - 1)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제곱미터 이하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함.
 - 다.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4)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 14.

• 마감일자 : 2019. 2. 2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철도까지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린더캐비닛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항제7호, 제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3항제2호다목, 별표 8,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24)

- 1) 특정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의 적용범위를 특정고압가스용에서 고압가스용으로 확대함.

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화기와의 거리 및 철도와의 거리 기준 완화(안 별표 5)

- 1)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안의 화기에 대하여만 화기와의 거리 유지를 제외하던 것을 가스설비 안의 화기에 대하여 거리 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철도까지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의2)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

라. 고압가스자동차의 공급자 정기안전점검 대상 제외(안 별표 14)

- 1) 현행 법령에서는 2년에 1회 이상 공급자가 수요자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자동차는 공급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 위치가 상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고압가스 자동

차를 공급자의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마.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를 회수대상에서 제외
(안 별표 27)

1) 현행 법령에서는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이미 판매한 가스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한 고압가스의 경우 회수 이전 대부분이 소진되므로 고압가스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4.
- 마감일자 : 2019. 2. 25.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나.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안 제20조의9제1항).

다.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20조의9제2항 신설).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

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별표1의2).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4. ● 마감일자 : 2019. 2. 25.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 제1항·제2항, 안 제20조제1항·제2항, 안 제25조제1항·제2항, 안 제29조의15제2항·제3항, 안 제36조의2제2항제7호 및 안 제36조의2제2항제12호 삭제).
 - 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20호의21서식, 별지 제20호의23서식 신설).
 - 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직원배치기준 중 조리원을 추가함(별표 2)
 - 라. 도서지역의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경우도 읍·면지역과 같이 경로당 시설기준을 이용정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함(별표 7).

5.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1. 14.
- 마감일자 : 2019. 2. 2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표로서 기장을 수여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14.
- 마감일자 : 2019. 2. 25.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내용 중 비배분비용·수익 정의의 단순화 및 일원화하여 원가구분을 명확하기 하고,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비배분비용’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2호)
 - 나. ‘비배분수익’의 정의를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1. 14.
- 마감일자 : 2019. 2. 25.
- 국방개혁 2.0 추진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라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급감을 고려하여 상비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3군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공통직위 육:해:공군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국방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여군 비율 상향 조정(안 제16조 제1항)
 - 1)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기술 집약형 국방 환경변화를 고려하

여 군내 여군 장교 및 부사관의 비중을 2022년까지 1,000분의 88 이상으로 확대함.

나.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 조정(안 제25조제1항)

- 1) 미래 병역자원 수급 전망 등 인력획득 환경과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

다. 국군 간부비율 조정(안 제26조제1항)

- 1) 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2020년까지 각 군별 간부비율을 일률적으로 40%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군별 부대유형별 연도별로 간부비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조정함.

라. 예비전력규모 개편 조정 목표연도 조정(안 제27조제2항)

- 1) 상비병력 감축연도 목표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예비전력규모 개편 조정 목표 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

마.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 조정과 순환보직 강화(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 1)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의 각 군간 비율을 현행 육:해:공군 2:1:1에서 대령이상의 공통직위는 1:1:1로, 중령이하의 공통직위는 2:1:1이하로 구분하여 조정함.
- 2) 합동참모본부 대령이상 공통직위에 같은 군 소속장교가 동일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 할 수 없도록 하되,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직위는 안보상황 및 군 인력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조항을 수정하여 법률로 명시함.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 16.
- 마감일자 : 2019. 2. 25.

- 2017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단쇄염화파라핀’이 부속서 에이(A)의 취급금지물질로 신규 등재됨에 따라 관리대상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목록에 추가하여 국내 관리체계를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공표업무를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 16.
- 마감일자 : 2019. 2. 25.
-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사용과 배출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2013년도에 채택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하였으나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를 보완함과 더불어 환경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하였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 전체)
 - 1) 이 법의 관리대상에 무기성 물질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포함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
 - 나.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과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승인 절차 개선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라 하더라도 등재된 물질을 수출 시에는 수입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수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 중임. 그러나 수입국에서 동의여부

에 대한 회신이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의 조치근거가 없어 수출승인도 지연되며, 사업자의 승인신청 시점도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환경청이 수입국에 수출통보 후 3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재통보, 재통보 후 3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수입국이 수출여부를 인지한 것으로 보고 수출을 승인하도록 하며, 사업자는 이를 고려하여 수출 90일 전에는 수출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 공표 방법 마련

- 1) 환경청이 배출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표 시기(행정처분 확정 즉시), 공표 방법(관할 환경청의 홈페이지 등)을 규정함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시점 명확화 및 합리화

-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6개월, 1년, 2년 주기마다 1회 이상 배출하는 다이옥신 농도를 스스로 측정(자가측정)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그러나 측정일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측정예정일에 측정분석기관의 사정 등으로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측정일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측정은 산정된 측정일 전후 각각 30일의 기간 내 측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 16.
- 마감일자 : 2019. 2. 25.

○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행 포장규제 대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전자제품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규제 적용 추진

○ 주요내용

가. 현행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전자제품류(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포함하며, 기존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중

단위제품 규제는 적용되고 있었으나, 종합제품 규제에 빠져있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해 종합제품 규제가 포함토록 개정(안 제7조 제2호)

11.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6. • 마감일자 : 2019. 2. 25.
-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기준액의 예를 준용하도록 함
 - 나.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득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요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 신설함

1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1. 16. • 마감일자 : 2019. 2. 27.
- 농어업 新성장 분야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 관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이 개정 (‘18.12.31.공포, ’ 19.07.01.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8항 신설)
 - 1) 농수산물가공품 2차 가공업자를 농림수산물 정의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된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

-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
- 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
설된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나. 농림수산업 자금 추가(안 제3조제12호 신설)

- 1) 법개정으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가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자금’에
도 농어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 16. ● 마감일자 : 2019. 2. 28.
-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으로 한정되었던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확대하도
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3호,
2018.12.3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의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
당하는 자”를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1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7. ● 마감일자 : 2019. 2. 26.
-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에서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의료급여 적용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라목 신설)

- 1)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 2)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7.
- 마감일자 : 2019. 2. 22.

○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영 제19조제3항)

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안 별표 2 제3호 라목 9) 및 가목 신설)

- 1)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 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율은 40% 또는 80%로 적용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7.
- 마감일자 : 2019. 2. 26.

○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 및 치매

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9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 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 설치 규정이 변경되고, 주·야간보호시설내 치매전담실의 1인 생활실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식 수정

1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7.
- 마감일자 : 2019. 2. 26.

-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개선하여 그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등 겸직을 허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인실 및 1인 생활실 설치의무 삭제(안 별표 4 제4호 및 별표 9 제2호)

- 1)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안에 1인실을 1실 이상 두고,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도 1인 생활실을 1실 이상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 자율에 맡김

나.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4 제1호)

- 1)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입소정원 30명 이상 시설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30인 미만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상한을 12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고, 정원 1명당 연면적 15m²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공동거실 면적기준 개선(안 별표 4 제3호)

- 1)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공동거실을 갖추되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실면적 기준을 정원 1명당 1.65m² 이상으로 변경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 설치규정을 폐지하되 화장실 등 핵심시설은 거실과 별도로 갖추도록 함.

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기준 개선(안 별표 4 제3호 및 제6호)

1) 15m² 이상의 옥외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함

마.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9 제4호, 제5호 및 제6호)

1) 이용자 1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이용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하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

18.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1. 17.

• 마감일자 : 2019. 2. 26.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52호, 2018.12.24. 일부개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뉴스통신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안 제17조 신설)

19.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 18.

• 마감일자 : 2019. 2. 27.

○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업계의 불필요한 이중포장 등을 제한하고, 포장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

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안 제11조)

- 1) 기존 대규모점포, 유통업체 등에 재포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판촉을 위한 재포장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포장재 사용감소 및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함

나. 전자제품류 등을 포장규제 대상으로 추가(안 별표1)

- 1) 과대포장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 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있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하려는 것임

2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8.
- 마감일자 : 2019. 2. 27.

- 14-18년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구순구개열 환자가 치아교정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비급여 대상 교정치료 중 구순구개열의 교정치료는 제외(별표 2 제2호라목, 마목)

21.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1. 18.
- 마감일자 : 2019. 2. 27.

-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823호, 2018.10.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배 보상금 적립 비율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 1) 저작물 이용형태, 분비실적 등을 고려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5/100 ~ 30/10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에 통보

2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18.
- 마감일자 : 2019. 2. 28.

-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며,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정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21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국가기술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평가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4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도록 함.

나.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21조의 4, 제21조의5 신설)

- 1)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정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추 것, 업무규정을 갖추 것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함.

다.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3 별표 4의2 신설)

-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천 5백만원, 3차 위반 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인증정비조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사망자가 2명 이하인 경우 2억원, 3명에서 4명인 경우 6억원, 5명에서 9명인 경우 12억원, 10명 이상인 경우 20억원으로 정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억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6억원으로 정함.

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 4 별표 4의3 신설)

- 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천 5백만원, 2차 위반 시 5천만원, 3차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천 5백만원, 3차 위반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함.

마.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철도차량 분야를 추가함(안 제59조 제1항제2호 ‘라’ 목 등 신설)

- 1) 철도차량의 설계·시험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안전전문기술자의 육성을 위해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범위를 전기·신호·궤도분야에서 철도차량 분야를 추가

바.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철도차량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6 개정)

- 1) 철도차량 소유자가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및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철도차량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25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사.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3조제1항제6호의4부터 제6호의10까지 신설)

-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인정취소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관리, 철도차량 이력관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작성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2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18. ● 마감일자 : 2019. 2. 27.
-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여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하는 대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부대시설의 범위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폭 넓게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단지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 도로의 존치 또는 변경을 통해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안 제5조제2항 신설)
 - 나. 다른 법령에서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안 제6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 18. ● 마감일자 : 2019. 2. 28.
- 각 신체부위별 형평성과 상이등급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흉터

의 장애 5급과 정신장애 7급, 생식기 장애 6급2항 등 등급기준을 신설하고, ‘및’ 과 콤마(,) 등 의미의 해석에 있어 오해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5.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 18. ● 마감일자 : 2019. 2. 27.
- 사립학교법 개정(' 18.12.)에 따라 관할청의 징계의결, 재심사 및 해임 요구를 미이행하는 임용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성비위 만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징계의결 기한을 30일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15.12.) 개정내용을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결에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성비위 사유 징계의결 기한 단축 (안 제24의8)
 - 1)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나.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 (안 제29조)
 - 1)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임용권자에 과태료를 부과
 - 다.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 (안 별표2)
 - 1)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

2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 21. ● 마감일자 : 2019. 3. 4.
- 정부의 보호시책 대상을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개정됨(법률 제15863호 2018.12.11)에 따라 실

태조사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맹사업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정부의 자금지원범위에 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21. ● 마감일자 : 2019. 3. 4.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2018.12.11. 개정, 2019.6.12.시행 예정)」개정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제36조)
 -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2017.2.8. 신설)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 나. 성범죄의 경력조치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6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 1)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치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의 폐쇄 요구를 거부하는 때의 절차 마련(제36조의3)
 - 1)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폐쇄 절차 근거를 마련함.

2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 21. ● 마감일자 : 2019. 3. 4.
- 농어촌정비법 개정(' 18.12.24. 공포, ' 19. 1.25. 시행)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요건 각각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안 제30조)

- 1) 저수지 상류 5km(도시 및 계획관리지역은 2km) 이내는 원칙적으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불허하되, 동 지역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과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 협의한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함

나.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시 설립 요건(안 제30조의2)

- 1)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이내는 오 폐수 전량 재이용,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 2)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초과 5km 이내(도시 계획 관리지역은 2km)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 3)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상기 요건을 갖추더라도 불허

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 21.
- 마감일자 : 2019. 2. 1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대한 공표 및 통보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안 제2조의2 신설)

- 1)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 22.
- 마감일자 : 2019. 3. 4
-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을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고, 영업자의 구분관리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안 제1조의2)
 - 1)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고자 함
 - 나.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안 제14조)
 - 1) 영업자의 구분관리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 22.
- 마감일자 : 2019. 3. 4
- 숙련도 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임하고,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42호, 2018.12.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숙련도평가업무를 위임(안 제14조제1항)
 - 나.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제2호다목)

32.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통상부)

- 예고일자 : 2019. 1. 22. • 마감일자 : 2019. 3. 4
- 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에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하거나 특별히 실용신안에만 적용되는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5조)
 - 1)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및 출원후 2개월내에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

33.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통상부)

- 예고일자 : 2019. 1. 22. • 마감일자 : 2019. 3. 4
- 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에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우선심사 대상을 삭제하고,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9조)
 - 1)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PCT 국제조사가 수행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22. • 마감일자 : 2019. 3. 4
-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무주택 요건으로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문제 발생하여,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양주택 입주시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거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시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19.1.9.)함에 따라,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이력사항을 포함하는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대기간 중 분양권등 소유시 거주 요건 등(안 제14조의11)

- 1) 임차인은 갖고 있는 분양권등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나.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안 제29조 삭제)

- 1) 일몰 기간(2년 또는 3년)이 도래된 규제가 존속 또는 비규제로 확정('18년 규제위 일몰규제 심사결과)되어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

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확인서' 신설 등 관련 서식 일제정비

- 1) 세금감면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이행(임대료, 임대유기기간 등)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식 신설 등

3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사원)

- 예고일자 : 2019. 1. 22.
- 마감일자 : 2019. 3. 4

- 기존에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무중과실 추정 요건인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하고, 그밖에 중복된 요건 등을 통합·간소화하여 자체감사에 있어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면책 요건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결과 받

생' 요건을 통합(안 제13조의3 제1항 개정)

- 1) '결과 발생'을 별도의 면책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통합하여 규정.

나.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무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안 제13조의2 제2항 개정)

- 1) 추정 요건 중 '자료·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제13조의3 제1항상의 '업무의 적극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
- 2) 추정 요건 중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완화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

36.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 23.
- 마감일자 : 2019. 3. 4.

○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동시에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5653호,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되어 통합 물관리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안 제2조 및 별표)

- 1)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고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함

나.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안 제3조 및 제5조)

- 1)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관계 부처 외청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 및 관계 부처 소속기관

장, 외청의 소속기관 장, 농림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킴

다. 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6조부터 제8조)

- 1) 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함

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업무 및 구성(안 제9조)

- 1) 물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심의안건 작성·검토, 조사·연구 등 물관리위원회 지원역할을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국가·유역물관리계획에 맞춰 수립·변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및 공청회 등(안 제10조부터 제15조)

- 1) 물관리 관련 법률(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소관)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포함시키고, 국가·유역물관리계획의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절차를 거친 후 제출된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함

바. 물분쟁 조정절차 및 방법, 조정업무 처리절차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직권 조정 물분쟁의 범위 등(안 제16조부터 제26조)

- 1) 물분쟁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사람이 사망하는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사회적 갈등이 심하여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를 규정함

- 사.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위탁(안 제28조)
- 1)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3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23.
 - 마감일자 : 2019. 3.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085호, 2016. 3. 22. 공포, 2019. 3. 23.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요청(제12조의2 신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다만, 복지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축·운영(제12조의3 신설)
 - 1)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및 비용 지원(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신설)
 - 1)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라.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 등(제12조의6 신설)

3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4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1 -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4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 24.
 - 마감일자 : 2019. 3. 5.
- KS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집행을 위해 조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4)
- 1) 「산업표준화법」의 개정(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4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24.
 - 마감일자 : 2019. 2. 14.
-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검사 총괄기관 지정,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 구성, 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의 업무 수행 및 보고 절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품인증 및 적성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이 해체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에 첨부

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3. 11.
- 도로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수도권 경우 30%, 전국 12%에 달하고, 차량의 배출가스는 근거리 오염원으로 인체 유해성이 높음.
-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18.11월)에 의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를 적극 추진할 필요. 또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증기준 삭제 필요
- 주요내용
- 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행정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 의무비율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안 제25조)
- 1)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18.11월)에서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 의무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
- 2) 기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70%였던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1년 1월 1일부터 80%로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
- 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서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2)
- 1)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18.11월)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있던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3. 6.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12.31. 개정, 2019.4.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진공 명칭 변경)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시행령 제31조, 제39조, 제48조, 제54조의12, 제54조의22, 제54조의29, 제55조, 제59조~제62조, 제64조, 제66조~제67조, 제5장 제목, 제68조~73조, 제74조~78조, 제79조,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나. (중진기금 및 중진채 명칭 변경)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기업벤처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채권 → 중소기업진흥채권

- 1) 시행령 제4장 제목, 제54조의34, 제55조,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다. (지원제품·대상 명칭 변경)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중소기업 → 중소기업·벤처기업

- 1) 시행령 제71조, 제77조 개정

45.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2. 8.

-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실증의 대상·자료의 요건·제출방법, 소비자 교육 또는 홍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시사항 등(안 제2조)

- 1)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나.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 1)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식품등에 표시를 하여야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 장소·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다.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 1)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라. 광고의 기준(안 제7조)

- 1)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 1)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

- 1)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 2)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 3)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 1) 식품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정함

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 1)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자.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 2)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3. 7.

- 무선방식의 화재감시 및 알림시설(화재알림설비)을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에 추가하여 사물 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도입 확산을 통한 4차산업을 육성하고, KT 아현지사 화재사고(2018.11.24.) 및 실태점검 결과 제기된 500m 미만 통신구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길이에 관계없이 “지하구”에 포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3. 6.

-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천연가스를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조정(안 제24조제1항제3호)

- 1)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함.

나. 발전용 천연가스 중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대상 규정(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 1)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용(집단에너지사업자·연료전지발전사업자·자가열병합발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톤당 3,800원의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함.

다. 기존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한 연장(안 제27조제1항제8호)

- 1) 기존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왔던 시설규모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다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던 것을 2019년 3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도 계속 환급하도록 함. 환급기한 연장에 따라 소규모 열병합 천연가스에 대하여 중단 없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3. 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에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관할관청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 조정, 의견 청취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조, 제3조)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양도 양수, 법인합병, 휴 폐업 등의 신고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 다. 그 외 오타 등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32조, 제33조)

4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3. 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에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 나.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50.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3. 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공사착공 보고, 분기별 공정보고 등의 접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추가함(안 별지 제40호서식, 제41호서식, 제42호서식)

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3. 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복합환승센터의 지정대장 기록 의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변경(안 제19조)
 - 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준공인가 등에 관한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5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3. 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고시, 준공 및 준공 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관리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2. 18.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출퇴근 불편 등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계획 수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 관련 업무를 이관하

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함께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 나.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함(안 제10조)
- 다.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 라.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추가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 마.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삭제하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
- 바.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에 한정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지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
- 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4항)
- 아. 대도시권 내에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여부의 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5항)
- 자.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미협의를

에 대한 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
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
제6항)

차.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의 결정 등 국토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
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 부칙 제2조제7항)

5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 25.
- 마감일자 : 2019. 2. 20.

○ 「교육공무원법」 개정(' 18.12.)에 따라 교육공무원도 조부모 손자녀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간병을 위한 가
사휴직의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부모 손자녀 간병 가사휴직 요건 규정 (안 제19조의5)

- 1) 조부모 간병 가사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손자녀 간병 가사 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
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가사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다만, 다른 직계비속 직계족손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
에 없는 경우를 포함